

제 1382 호
1987. 11. 18

서울특별시청 서울특별시청
서울특별시청 서울특별시청
서울특별시청 서울특별시청
서울특별시청 서울특별시청
서울특별시청 서울특별시청

<보람용>

시 보

차 례

◎ 조 례	
제 2217 호 : 서울학생교육원설치	3
◎ 고 시	
제 789 호 :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	4
제 797 호 : 도시계획시설(도로, 여객자동차정류장) 지적승인	6
제 801 호 : 보호수지정해제	7
◎ 구 고 시	
관악구제 93 호 : 도시계획사업(일반의주벽적조성사업) 시행허가	7

(이면계속)

상									
합									

1. 시 공무원은 합동시 임야에 한다.

2. 시청은 관공서청사원, 모형을 갖춘다.

서울특별시

◎ 사업소고시	
한강관리사업소제 15 호 : 선박운항허가	8
한강관리사업소제 16 호 : 선박운항허가	8
◎ 공 고	
제 663 호 : 도시계획사업 (도로) 실시계획공람	9
제 666 호 : 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변경 (기간연기) 공람	10
제 667 호 : 환지계획변경인가및변경지정윤위한공람	10
제 668 호 : 도시계획사업 (유통업무선비) 완료	11
제 669 호 : 도시계획사업 (도로) 실시계획공람	11
제 671 호 : 제 2 중전기공사업체영입정지처분	14
제 672 호 : 제 2 중전기공사업체면허취소	15
제 673 호 : 도시계획안공람	15
제 676 호 : 제 2 중전기공사업면허실효처분	16
◎ 구 공 고	
도봉구제 517 호 : 관인신조	16
◎ 사 령	

조 례

불교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"서울학
교육원 설치조례"를 이에 공포한다.

1987. 12. 12

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교육장 최영근

◎서울특별시조례제 3217 호

서울학성교육원설치

제 1 조 (설립목적) 학생들의 올바른
가치관과 국가관을 확립하고 호국학
도로서의 진취적기상을 길러 국가와
민족이 바라는 자질과 품성을 함양
시키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의
산하에 서울학성교육원(이하 "교육원"
이라한다)을 설치한다.

제 2 조 (위치) 교육원은 경기도 가평
군 가평읍 상석리산 106 번지에 둔다.

제 3 조 (기능) 교육원은 다음 각호의
업무를 수행한다.

1. 학생수련
2. 교원 및 청소년 지도자 연수
3. 기타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
는 자의 교육훈련

제 4 조 (원장) ①교육원에 원장을 두
되, 원장은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
으로 보한다.

②원장은 교육장의 명을 받아 전무
를 겸장하며, 소속공무원으로 각위 강
독한다.

③원장이 사교가 있을 때에는 교육부

장, 연수부장, 사무과장 순으로 그
직무를 대행한다.

제 5 조 (학부조직) ①교육원의 사무를
분장하기 위하여 사무과, 교학부, 연
수부를 둔다.

②사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, 과부
장은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으로
보한다.

제 6 조 (정원) 교육원의 두는 지방
공무원의 정원은 교육관직으로 정한다.

제 7 조 (사무과) ①사무과의 업무를
관리하기 위하여 사무과장, 관리직을
두되, 과장은 지방행정사무사로 보한다.

②사무과는 다음사항을 분장한다.

1. 일반사무 및 관인편수
2. 문서수발, 봉쇄 및 보관에 관
한 사항
3. 인사, 복무, 직원복지에 관한 사항
4. 식당운영 및 피복, 청구관리
5. 청소 및 차량관리
6. 기타 과부, 과장의 속하시 아
니하는 사항

③관리직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

1. 세입, 세출 예산집행 및 결산
에 관한사항
2. 급여 및 복지수급 관리에 관
한 사항
3. 관공 수급관리에 관한 사항

제 8 조 (교학부) 교학부의 업무를 처
리하기 위하여 기획실과 교학실을
두되, 실장은 장학사 또는 교육연구
사로 보한다.

①기획실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

1. 교육계획의 수립 및 심사분석
 2. 교육과정 편성 및 교관선정 (의해강사 포함)
 3. 분임편성 및 담당교관 배정
 4. 교관연수 및 교육방법 연구에 관한 사항
 5. 기타 타실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

②교학실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

1. 등록접수 및 생활실 배정에 관한 사항
 2. 일과 및 의식진행
 3. 학적관리 및 이수증 발급
 4. 각종 평가에 관한 사항
 5. 수련교재 및 각종도서 발간
 6. 기타 수련진행에 관한 사항

제 9 조 (연수부) 연수부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지도실과 운영실을 두되, 실장은 장학사 또는 교육연구사이다.

①지도실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

1. 수련생활의 지도계획수립
 2. 수련생의 생활지도 및 상벌에 관한 사항
 3. 현장학습 및 특별활동 지도
 4. 자치활동 및 분임토의 운영에 관한 사항
 5. 수료생 추수지도에 관한 사항
 6. 기타 수련생지도에 관한 사항

②운영실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

1. 수련생활 안내에 관한 사항
 2. 생활실 정리정돈 및 환경미화
 3. 방송실운영 및 시청과 기자재 제작관리

4. 보건위생관리 및 양호실 운영
 5. 도시실운영 및 각종통계, 홍보 자료의 작성
 6. 기타 수련계획의 시설개선에 관한 사항

제 10 조 (자문위원) ①교육원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문위원 약간명을 둘수 있다.
 ②자문위원은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원장이 위촉한다.
 ③자문위원에게는 예산외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
제 11 조 (장외부담) 교육원시설 이용자에 대하여는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숙식비 및 교재대동 실비를 징수할 수 있다.

제 12 조 (시행규칙)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고 시

◎서울특별시교시제 789 호

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

주택건설 촉진법 제 33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45 조제 5 호의 규정에 의거 민영주택 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고 동법 시행령 제 32 조의 5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.

1987.11.13
서울특별시청

1. 사업명 : 민영주택건설사업		
2. 변경내역		
구분	변경전	변경후
사업 주체	한국의환은행 제3직원주택조 합 조합장 이규홍외 299명	서울중구올거리로 2 가 181 번지 한국의환은행제 3 직원 주택 조합 조합장 이규홍외 299 명
		종로구세종로 77 번지 내무부직장주택조합 조합장 홍중순외 10 명
		종로구세종로 77 번지 총무처제 2 직장 주택조합 조합장 남세종의 14 명
		종로구세종로 1 번지 대경직장주택조합 조합장 박영철외 50 명
		종로구세종로 77 번지 체육부직장주택조합 조합장 백 익외 30 명
		종로구수송동 108-4 서울지방국세청직원주택조합 조합장 문명환외 19 명
		종로구수송동 108-4 국세청직장주택조합 조합장 임경환외 41 명
		서대문구미군동 209 치안본부직장주택조합 조합장 이상도외 23 명
		영등포구여의도동 1 번지 국회사무처직장주택조합 조합장 이행준외 15 명
		중구남대문로 5 가 541 수산청직장주택조합 조합장 민성규외 9 명
		종로구세종로 1 가 30-1 외무부제 2 직장주택조합 조합장 노석영외 23 명
		종로구 경운동 종로경찰서직장주택조합 조합장 조한주외 9 명
		종로구 청운동 육군제 8327 부대직장주택조합 조합장 정진문외 44 명
		종로구뚝현동 153-2 민주정의당직장주택조합 조합장 김태현외 50 명

구분	등급	유형	폭원(A)	연장(A)	시	점	종	검	비	고
기점	소토	3	6	98	구로구개봉동	165-2	개봉동	166-2		
변경	"	3	4.5-6	98	"	"	"	"		독원및위리소점
신설	"	3	4-8	75	구로구오류동	85-4	오류동	88-3		
신설	"	2	8	196	구로구천왕동	12	천왕동	30		

나. 도시계획시설 (여객자동차 정류장) 지적승인 조서

구분	시설명	위치	규모 ()	비고
기점	여객자동차정류장	구로구가리봉동 535-4 일대	7,264	
변경	"	"	6,671	감 593

다. 별첨 도면표시와 같음 (도면생략)

○ 서울특별시 고시 제 801 호

보호수 지정 해제

산림법 제 69 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 4 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같이

보호수 지정을 해제하였기 이를 고시한다.

1987.11.13
서울특별시산

보호수 해제 내역

지점번호	지점종격	수종및주소	소	점	지	소	유	자	해	제	사	유
1-23	시나무	합나무 1주	관악구북천동	218-4		회	법	진	고	사		
1-1-	동나무	느리나무 1주	중로구신영동	132-1		시	유		고	사		
5-3												

구 고 시

○ 관악구 고시 제 92 호

도시계획사업 (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) 시행허가

1. 서울특별시 고시 제 744 호 (87.10.22)

은 도시계획사업구역 및 구역내 도시계획 시설 결정되고 같은 고시 제 745 호 (87.10.24) 로 지적 승인된 도시계획 사업 (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) 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 24 조 같은법시행령 제 25 조 및 제 6 조와 별정권한 위임 조례에의거 도시계획사업 (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) 시행 허가하고 이를 고시한다.

2. 관계도서는 관악구청 도시정비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인다.

1987.11.13
관 각 구 청 장

가. 사업시행지 -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산 133-8의 2필지
 나. 사업의종류 - 도시계획사업 (일반의 주택지조성사업)
 명칭 - 새 강원의속 신축
 다. 사업시행자주소 - 강원도 춘천시 봉의동 산 15 번지
 성명 : 강원도지사
 라. 사업시행기간 - '87.11. - '88.12.31
 마. 사업시행면적 - 14,928 제곱미터
 바. 허가도서 - 별첨 (생략)
 사.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, 건물의 소재지, 지번, 지목 및 소유권이의의 권리의 명세 - 별첨 (생략)
 아.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

수용법 제4조 제3항의 관계인의 주소
 성명 - 별첨 (생략)

사업소 고시

○한강관리사업소 고시 제 15 호

선 박 운 환 허 가

한강 구역내 선박(유람선)영업에 대하여 하천법 제25조제1항 규정에 따라 선박의 운항을 허가하고 같은 법 제 25 조제 4 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 22 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이를 고시한다.

1987.11.13
한강관리사업소장

○선박운항 허가내용

접용수허가자	접 용 위 치	접 용 목 적	접 용 내 역
(주)세모대표 유 별 언	영등포구여의도동 85-1앞 한강수면 강동구잠실동 19번지 앞 한강수면	유람선유선업 경영을 위한 선박운항	유람선 4척

○허가기간 : '87.10.26 - '88.10.25

○한강관리사업소 고시 제 16 호

선 박 운 환 허 가

한강 구역내 선박(유람선)형선에 대하여 하천법 제 25 조제 1 항 규정

따라 선박의 운항을 허가하고 같은 법 제 25조제 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 22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○ 선박운항 허가내용		이를 고시한다. 1987. 11. 한강관리사업소장	
적용수허가 (원광대표) 류 복 수	적용 위치 영등포구여의도동 35-1 앞 한강수면 강동구잠실동 19번지 앞 한강수면	적용 목적 유람선유선업 경영을 위한 선박운항	적용기간 유람선 4척
○ 허가기간: '87.10.25 - '88.10.24 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 display: inline-block;">공 고</div> ◎서울특별시공고제 663 호 도시계획사업(도로)실시계획공람		을 도시계획 도로에 관한 도시계획 사업을 시행코자 도시계획법 제 25조 2항 및 동법시행령 제 27조에 의 거 다음과 같이 공람공고한다.	
1. 서울특별시가 결정지치 승인한 다 가. 사업개요			
사업시행지 수유3동392- 22외B필지	사업종류및 사업명칭 도시계획사업 (도로) 수유3동392번 지도로개설공사	규 모 B=6 L=160	차 공 87.11
			준 공 87.12
			결정고시 일 자 서울고시 제 89호 (72.6.30)
			지적고시 일 자 서울고시 제 89호 (72.6.30)
나. 사업의 시행자주소, 성명: 서울특별시장 다.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(건물 조): 별첨토지 및 건물조서 라. 공람기간: 공고일로부터 14일간 마. 위치도 및 계획평면도: 별첨		바. 토지(건물)로서 및 도면은 도봉 구청, 도목과와 건설관리과에 비치 공람한다. 1987. 11. 13 서울특별시장	

◎서울특별시공고제 666 호
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변경(기간연기)공람

1. 서울특별시에서 시행중인 영동, 김포 및 가락지구에 대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 34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 사업을 계획변경(기간연기)하고자 동법 제 33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14일간 보인다.

2. 관제도서는 도시계획국 구획정리과 및 관할구정 도시정비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개별통지는 아니하고 본 공고로 알음한다.

1987.11.13
 서울특별시장

가. 사업기간연기 내역

지구명	안가면적(㎡)	시행자	사업시행기간		비고
			기정	변경	
영동	1,851,398	서울특별시장	71. 8.24 87.12.31	71. 8.24 88.12.31	1년연장
김포	4,706,334	"	68. 1.23 87.12.31	68. 1.23 88.12.31	"
가락	7,452,003	"	82. 3.20 87.12.31	82. 3.20 88.12.31	"

◎서울특별시공고제 667 호
환지계획변경인가및환지예정지변경지정을위한공람

1. 김포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내 공랑로 부지에 편입되어 보상완료된 일부토지에 대한 환지권리명적 조정할(환지예정) 사유가 발생되었고,
 2. 지구내 402부락에 연결한 15m 계획도로(중2-4)를 30m 계획도로(대2-4)로 확폭 변경계획에 따라 도로확장 구간에 석축된 토지에 환지변경(권리명적 조정 및 위치변경)사유가 발생되어,
 3. 구획정리 사업법 제 47조, 제 55조 및 제 56조의 규정이 정함하여 따라 환지계획 변경인가 및 환지예정지 변경 지정요령과 같은법 제 33조의 규정에 의거 14일간 일반에게 공람에 공하며,

- 4. 도시계획 변경도서는 도시계획국 구획정리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.
- 5. 본 공고내용은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별도 송달될 것이나, 미수령자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갈음한다.

1987.11.13.

서울특별시

* 환지계획 변경지역

- 가. 사업명 : 길포 토지구획정리사업
- 나. 변경면적 : 26,175.2㎡ (7,918.2명)
- 다. 변경필수 : 41필
- 라. 변경위치 : 1) 장서구청 일구-원당사거리간 공항로 진입토지
2) 선당사거리 북측 402부락 일대

◎서울특별시공고제 668 호

도시계획사업 (유동업무설비) 완료

- 1. 서울특별시 고시 제 120 호 ('86. 2.27) 로 시행허가된 서울특별시 도봉구 철계동 333-1 일대 도시계획사업 (유동업무 설비) 이 완료되었기 도시계획법 제 57 조의 2 및 제 85 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한다.
- 2. 변경도서는 도봉구청 도시장비과

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인다.

1987.11.13.

서울특별시

- 가. 사업시행자 : 도봉구 철계동 333-1 일대
- 나. 사업의 종류 : 도시계획사업 (유동업무설비)
- 명칭 : 성신양회공업㈜ 시멘트 저장창고 증축
- 다. 사업의 규모
대지면적 62,556㎡
기존건축면적 3,139㎡
금회증축 (창고) 6,636㎡
하수도(암거) 2m×1.5m×115m
- 라. 사업시행자
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 134-27 성신양회공업㈜ 대표이사 김영준

◎서울특별시공고제 669 호

도시계획사업 (도로) 실시계획공람

- 1. 서울특별시가 결정 의결 승인한 다음 도시계획도로에 관한 도시계획 사업을 시행코자 도시계획법 제 25 조 2 항 및 동시행령 제 27 조 2 규정의 의거 관계서류를 공람한다.
- 2. 토지 (건물)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는 개별 통지할 것이나 미수

경자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관을 한다.

3. 관계도서는 도봉구청 토목과 및 건설관리과에 비치하여 공고일로부터 14일간 일반인에게 공람하고

있으며, 본 사업시행에 따른 의견서는 공람공고 기간내 공람장소로 제출하기 바람.

1987.11.13.
서울특별시

공 고 내 용

가. 사업개요

사업시행지	사업종류 및 사업명칭	구 모	착 공	준 공	결정고시일자	적정고시일자
미아동 75의 4-방천시장 간	도시계획사업 (도로) 미아동 75의 4-방천 시장간 도로개설공사	도로개설 B=6m L=250m	'88.3.1	'88.12.31	서울특별시 고시제 3호 ('89.1.18)	서울특별시 고시제 3호 ('89.1.18)

나. 공사사업의 시행자: 서울특별시
나.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(건물) 주소: 별첨 토지 (건물) 주소
라. 위치도 및 계획면도: 생략

마. 공람장소: 도봉구청 토목과 및 건설관리과
바. 공람기간: 공고일로부터 14일간
사. 기타 상세한 사항은 도봉구청 토목과에 문의 바람.

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(건물) 주소

지 번	종 류	면 적	현입면적	소 유 자 주 소	성 명
미아4동 75-329	대 지	1 ㎡	1 ㎡	미아동 75-95	노 경 욱
" 75-330	구 처	5 "	5 "	"	"
" 75-331	"	22 "	22 "	미아동 77-71	박 도 순
" 75-332	"	74 "	74 "	강동구길동 344-21	정 태 서
" 75-310	"	115 "	115 "	"	"
" 75-313	"	141 "	141 "	미아동 77-71	박호준외3인
" 75-315	"	2 "	2 "	강동구길동 344-21	정.태 서
" 75-316	"	11 "	11 "	"	"
" 75-317	"	17 "	17 "	"	"
" 75-234	"	8 "	8 "	"	"
" 75-235	대 지	8 "	8 "	미아동 75-22	홍 보 상

지번	종류	면적	권입면적	소유자주소	성명
미아4동 75-237	구거	10㎡	10㎡	강동구 길동 344-21	정태석
" 75-238	"	3㎡	3㎡	강동구 길동 344-21	"
" 75-325	대지	5㎡	5㎡	삼북구 실음동 1263-40	전진구
" 75-325	"	1㎡	1㎡	춘천시 소각동 155-2	박영우외4인
" 75-272	구거	17㎡	17㎡	강동구 길동 344-21	정태석
" 75-273	"	17㎡	17㎡	"	"
" 75-244	"	79㎡	79㎡	강동구 길동 344-21	"
" 75-324	대지	6㎡	6㎡	"	"
" 75-245	구거	2㎡	2㎡	"	"
" 75-311	"	4㎡	4㎡	"	"
" 75-333	"	6㎡	6㎡	"	"
" 75-334	"	6㎡	6㎡	미아동 77-71	박호순외3인
" 75-335	"	9㎡	9㎡	"	"
" 54-280	대지	9㎡	9㎡	강동구 길동 344-21	정태석
" 54-275	"	35㎡	35㎡	"	"
" 54-267	"	39㎡	39㎡	"	"
" 54-268	"	60㎡	60㎡	미아동 54-10	이양임
" 54-269	"	40㎡	40㎡	" 54-87	전장호
" 54-271	"	16㎡	16㎡	" 54-86	전광우
" 54-272	"	20㎡	20㎡	" 54-85	윤호중
" 54-273	"	4㎡	4㎡	" 54-84	차홍일
" 54-274	"	25㎡	25㎡	강동구 길동 344-21	정태석
" 54-278	도로	3㎡	3㎡	"	"
" 54-279	대지	29㎡	29㎡	"	"
" 54-280	"	9㎡	9㎡	"	"
" 52-52	도로	221㎡	221㎡	미아동 52-11	김은복
" 75-19	건물담장	36.93㎡	1.5㎡	" 75-19	이종옥
" 75-20	"	33.65㎡	3.3㎡	" 75-20	김준태
" 75-21	"	35.77㎡	4.5㎡	" 75-21	조용조

지 번	종 류	면 적	전입면적	소 유 자 주 소	성 명
미아 4 동 75-268	담 장	82.61㎡		미아동 75-268	홍용선
" 75-263	전월담장	83.37㎡	6.0㎡	" 75-263	김삼연
" 54-10	"	159.93㎡	80㎡	" 54-10	이양일
" 54-87	전 물	102.64㎡	44㎡	" 54-87	전강호
" 54-86	"	51.90㎡	30㎡	" 54-86	권광육
" 54-85	"	75.30㎡	32㎡	" 54-85	윤호중
" 54-84	"	26.11㎡	6㎡	" 54-84	차용일
" 54-73	"	36.50㎡	2㎡	" 54-83	장경숙

사용토는수용합토지 (건물) 조서

지 번	종 류	면 적	전입면적	소 유 자 주 소	성 명
미아동 75-95	전 물	40.16㎡	10㎡	미아동 75-95	엄경옥
" 54-111	전 물	72㎡	3㎡		
-220	(유취가)				
" 54-144	"	60㎡	35㎡		
-244					
" 54-245	"	69㎡	55㎡		
-145					
계	토 지	1079.0㎡	1,079㎡		
	전 물	966.85㎡	317.3㎡		
	담 장	1개소	1개소		

◎서울특별시 공고제 671 호

제 2 종 전기공사업체 면허취소

국세징수법 제 7 조 및 전기공사업법 제 29 조 제 2 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

같이 제 2 종 전기공사업체에 대하여 영업정지 처분하였기 전기공사업법 제 42 조의 규정에 의거 공고한다.

1987년 11월 13일

서울특별시청

연번 번호	업체명	대표자	소재지	행정처분사유	사 유
제 911 호	반도 건설(주)	이영환	용산구 이촌동 392-68	영업정지 2개월 ('87.11.11 - '88.1.9)	국세징수법 제7조 및 전 기공사법 제 39조 2항

◎서울특별시공고제 672 호

제 2 종 전기공사업 면허취소

전기공사업 제 31 조 제 1 항 규정에

의거 다래와 같이 전기공사업 면허
를 취소하였기 등일 제 42 조 규정
에 의거 이를 공고한다.

1987.11.13

서울특별시장

아
여

연번 번호	업체명	소재지	대표자	취소사유
제 691 호	대한건설	영등포구당산동 3 가 257-8	장규옥	전기공사법 제 7 조 (면허지속미달)
제 1185 호	광희건설 공 사	영등포구대림동 909-12	신광희	상 동

◎서울특별시공고제 673 호

도시계획안 공람

1. 도시계획법 제 16 조의 2 및 동
법시행령 제 14 조의 2 의 규정에 의
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안을 다음
과 같이 공고하고 아래장소에서



14 일간 일반에게 보인다.
2. 도시계획관계 대하여 의견이 있
을 때에는 공람기간내 의견서를 공
포구청에 제출하시기 바란.
가. 공람기간: 1987.11.13-1987.

11.27 (14 일간)

1987.11.13

서울특별시장

○ 도시계획안					
구 분	도시계획안	위 치	규 모	공함장소	비 고
도시계획 신 설	도로확정	종로구부암동 131-4 일대	폭원 : 8 m 연장 : 130 m	종로구청 도시정비과	
"	도로변경 결정	종로구경창동 103-1 일대	폭원 : 8 m 연장 : 90 m	"	시공전에 따 른 위치변경
* 별첨도면 참조 (도면생략)					
◎서울특별시공고제 676 호			의거 다음과 같이 전기공사업법 면허 를 실효처분하였기 전기공사업법 제 42 조 규정에 의거 공고한다.		
제 2 종 전기공사업 면허실효처분			1987.11.30		
전기공사업법 제 30 조 5 항 규정에			서울특별시장		
면허번호	업 재 명	소재지	대표자	처분사항	사 용
제 2 종 558 호	(주)성스메이지 변진너머빌	서울시구로구 구로동 1124-40	성낙균	면허실효	전기공사업법 제 30 조 5 항 (공사 업 폐지)
구 공 고			서울특별시 관인규칙 제 6 조에 의거 이를 공고한다.		
◎도봉구공고제 517 호			1987.11.13		
관 인 신 조			도 봉 구 장		
서울특별시 관인규칙 제 2 조 2 항 및 제 3 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 이 우리구산하 상제제 2 동의 분소민 원용 직인,제인용 신조 승인하였기,			가. 관인신조동명 : 상제제 2 동 (분소민원용) 나. 사용개시일시 : 1987.11.7 09:00 다. 신조관인일명 : 마로잡림		

인 장			
공인명	상계제 2 동분소장의인민원사무전용 (직인)	상계제 2 동분소장의인민원사무전용 (직인)	
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 display: inline-block;">사 령</div>			
◎ 1987년 11월 10일자 령계 347호			
성명	발령사항	원직급	직급
안영주	서울지방검찰청 과장 ('87.11.10-'88.11.4)	감서구	지방보건의사
김근래	"	동대문구	지방보전기원
령계 348호			
성명	발령사항	원부서	직급
최진선	지방공무원법 제 69 조제 1 항 제 1, 2 호의 규정에 의거 전 책에 처함	북부건설사업소	지방보전기원
박규하	지방공무원법 제 69 조제 1 항 제 3 호의 규정에 의거 전 책에 처함	한강관리사업소	지방전기원 (기능직 8등급)
령계 349호			
성명	발령사항	원부서	직급
김현식	법민족윤리위원회 ('87.11.10-'88.12.31)	내무국	지방행정사무원

◎ 1987 년 11 월 10 일자		명제 350 호	
성 명	발 령 사 항	원 부 서	직 급
정 정 숙 이 규 원	불문(공고) 지방공무원법 제 69 조 제 1 항 제 1, 2 호의 규정에 의거 "결정"에 처함	예산담당관 중대문구	지방행정주사보 지방행정서기
김 창 환	불문(공고)	마포구	"
◎ 1987 년 11 월 11 일자		명제 351 호	
성 명	발 령 사 항	원 부 서	직 급
오 만 석 압 옥 분	수원기전과 지방화공기사보 시정개발담당관 지방사서서기	내 무 국 "	지방화공기사보서보 지방사서서기서보
◎ 1987 년 11 월 12 일자		명제 352 호	
성 명	발 령 사 항	원 부 서	직 위 직 급
김 충 민 권 중 수	인사과 교육훈련계장 가스과 안전관리계장 직대	가스과 공무원교육원	안전관리계장 교육과 지도계장
정 효 성 심 오 택 이 중 철 백 순 기 김 규 회 김 한 근 최 송 범 강 내 원	공무원교육원 전자계산소 전산 1 계장 직대 한강관리사업소 건담구명안내센터부소장 동 작 구 성 동 구 서 대 문 구 강 서 구	내 무 국 " " " " 보건위생과 비상재피과 심사본과 담당관	지방행정사무관 행정사무관 " 지방행정사무관 " 지방행정주사 " " "
박 동 봉 윤 상 수 이 별 려 최 준 형	마 포 구 강 남 구 업무과(부경급수안속반) 내무국(서정실)	새 정 과 새마을지도과 관악구 종로구	" " " "

성명	발령사항		원부서	직위	직급		
권택상	내무국(기획관리실 소송 대책본부 파견)		서대문구	사회복지과장	지방행정사무관		
◎ 1987년 11월 13일자 경력 133호							
성명	발령사항		원부서	직위	급		
김기성	전자계산소		자동차관리사업소	지방행정주사			
이인선	자동차관리사업소		교통기획과				
◎ 1987년 11월 14일자 경력 104호							
성명	발령사항		원부서	직위	급		
김경태	'87.8.24 자 신규입용발령을 동일자로 취소함		중앙각수처리장	지방관리원(보통직)			
1. 파견명령사항							
소속	직급	성명	훈련대상국	훈련기간	훈련분야	훈련비용	비고
농촌지도소	농촌지도사	조성원	자유중국	'87. 11. 25 12. 4 (10일간)	경소년 지도	일소년후학회 부담	
서울특별시							